



—質疑와 有權解釈—

여기에는 質疑応答 内容은 被保險者 医療保険組合, 医療機関 및 其他機関으로부터의 質疑에 대한 当局의 有權解釈입니다. 이 栏은 会員病院의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固定栏으로 連載하고 있어오니 많은 參考바랍니다.

【問】계수형 전산적 감산혈관 조영술 (D. S. A,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의 放射線撮影術에 대한 医療保険酬価 算定方法.

【答】계수형 전산적 감산혈관 조영술은 정맥으로 조영제를 주입하여 동시에 많은 동맥혈관을 관찰진단하는 검사이므로 촬영료는 (다-3-나); 心臟 또는 血管 (1件当) Heart or Vessels.

판독료는 (다-5-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 카테라 삽입료는 (다-4-나); 분류번호 「다-2」: 特殊撮影, Special Radiography 및 分類番號「다-3」의 「나」心臟 또는 血管 (1件当) Heart or Vessels에 記載하는 사진의 경우. (나-653-나)『心臟카테텔법에 의한것』X1/6, 조영제 주입료는 (다-3-가); 「消化管 Digestive System」의 所定金額을 算定하고 이에 소요된 카테타, 조영제, 필립, 가이드 와이어 (구입가의 1/3)의 비용은 診療酬価 算定方法 제 5, 6에 의거 算定하기 바람 (적용일자 '84. 10. 1 진료분부터)

【問】泌尿器科에서 방광암으로 혈괴와 혈뇨가 심한 경우 혈괴제거를 위하여 생리식염수를 다량 (20,000~39,000ml) 사용하여 방광세척을 할 경우 생리식염수 산정방법.

【答】방광내의 혈괴 및 혈뇨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한 생리식염수는 診療酬価 基準額

表 제 9 장 제 1 절 - (10) - 23 ; 외과처치 (자-2-1), 피부과 처치 (자-18), 화상처치 (자-18-1), 위세척 (자-262)에 사용된 생리식염수 (단, 총사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준용하여 算定할 수 있음 (적용일자 84. 10. 1 진료부터)

【問】医療保険 患者가 他人의 加害로 医療保険 患者라고 하는 提示 또는 의사표시 없이 치료를 받고 入院하여 다음날 医療保険カード가 있으나 加害者와 보상금을 合意하여 一般患者로 診療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入院 5일 後 医療保険으로 診療를 받겠다고 하였을 때에 医療保険으로 適用할 수 있는 時点은 언제인지 ?

【答】医療保険 患者の 給與事由가 제 3 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被保險者は 医療保険法施行規則 제27조(公·校 医保法 施行規則 제33조) 규정에 의거 保險者에게 通報하여야 하고 療養取扱機関은 療養給與基準 I - 10 (통보의무)에 의거 소속 保險者에게 通報하여 医療保険 給與 與否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患者가 診療를 받을 시 被保險者(被扶養者) 임을 該하지 아니하거나 医療保険 給與를 拒否한 境遇에는 本人이 保險給與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 保險者의 確認을 위하여 처리하여야 함.